

의안번호	2204298
의 퇴 인	정진욱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9.
추계번호	24A4080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(신고포상금 지급)	○ 특허청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 “제2조제3호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소개·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”를 추가함(제1항제2호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6조(신고포상금 지급)	○ 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“법 제2조제3호1)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같은 조 제3호의2)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소개·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신

1)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영업비밀 침해행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절취(竊取), 기망(欺罔), 협박,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(이하 “부정취득 행위”라 한다)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(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행위

나.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

다.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

라.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

마.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

바.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

2) 안 제2조 3의2. “영업비밀 침해 소개·알선 등 행위”란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·알

고한 자”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
- 현행법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“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(「상표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)를 한 자를 신고한 자”에 한정되며,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
 - 신고포상금의 최근 집행실적을 보면, 2024년 8월 기준으로 1,800만원(4건) 수준임

[표 1] 신고포상금(법 제16조 관련) 지급 현황

(단위: 백만원, 건)

	2020	2021	2022	2023	2024. 8월
신고포상금 지급액	107	94	54	26	18
신고포상금 건수	89	83	27	13	4

자료: 특허청

-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 제18조제1항³⁾ 위반행위 건수가 연평균 3건 내 외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소개·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 - 참고로, 법 제18조제1항 위반행위 건수는 2021년 1건, 2022년 5건, 2023년 4건 등임(특허청 특사경 수사건 기준)

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.

- 3)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벌칙)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영업비밀을 취득·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
 - 나.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
 - 다.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
 2. 절취·기망·협박,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
 3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(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)하는 행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